

[별지 제41호의4서식] <개정 2020. 4. 13.>

**식품()영업등록사항 변경 [] 등록신청서
[] 신고서**

※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뒤쪽참조
신청(신고)인	성명	생년월일		
	영업의 종류	등록번호		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	
영업자 성명 (법인의 경우 그 대 표자의 성명)				
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				
영업소 소재지				
영업장 면적		m ²		m ²
시설 등				

변경사유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<p>1.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. 영업등록증 1부 나. 새롭게 제조·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다.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</p> <p>2.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. 영업등록증 1부 나.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</p>	수수료 소재지 변경: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: 9천300원 (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<p>1. 건축물대장(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</p>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(신고)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기간

1. 등록사항 변경등록 : 3일

2. 등록사항 변경신고 : 즉시

유의사항

1.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
 - 가. 영업소 소재지
 - 나. 식품제조·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·가공하려는 경우
 - 다.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
2.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
 - 가. 영업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),
 - 나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 - 다. 영업장 면적
3.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
5.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(신고)인

처리기관 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)